

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'96 ~ 2000년까지 조성하여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체육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 조례의 규정중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불합리하게 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가. 기금운용계획안의 시의회 제출을 명확히 함 (안 제3조)
- 나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(안 제4조의2 신설)
- 다. 체육진흥기금관련 회계공무원중 분임운용관을 삭제함 (안 제10조제1항제2호 삭제)
- 라. 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함 (안 제11조)
- 마.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함 (안 제12조)

□ 개정조례안 : 별 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별 첨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□ 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 (기금의 결산)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(서류)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
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
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서류(자료)

제7조제2항중 “직무를”앞에 “부득이한 사유로”를 삽입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 조명 “회계관리”를 “관계규정의 준용”으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 (관계규정의 준용)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중 “기금운용계획”을 “예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체육담당관실
임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체육담당관 권 오 달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체육진흥담당 김 왕 수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박 수 정 (행정 2149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기금의 운용, 관리) ① <u>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안산시금고에 예치한다.</u> ② ~ ④ (생략)</p> <p>제4조 (기금의 운용계획) ① ~ ② (생략) ③ <u>기금운용과는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산시체육회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 (기금의 운용, 관리) ① <u>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 (기금의 운용계획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의2 (기금의 결산) ① <u>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② <u>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(서류)이 포함되어야 한다</u> 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서류(자료)</p>
<p>제7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 ② <u>위원장이 <삼입>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</u></p>	<p>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부득이한 사유로</u></p>
<p>제10조 (회계공무원) ① <u>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u></p> <p>1. 기금운용관 : 기획실장 2. <u>부임운용관 : 문화체육담당관</u> 3. <u>기금출납원 : 체육진흥업무담당주사</u> ② (생략)</p>	<p>제10조 (회계공무원) ① _____ _____ _____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 (회계관리) 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 금관리에 관한 규정 및 안산시보조금관리조 례를 준용한다.</p>	<p>제11조 (관계규정의 준용)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 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과· 관리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</p>
<p>제12조 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 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 (수당 등) _____ _____ 예산 _____</p>

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1023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2. 2. 23.
제 안 자 : 의회·행정위원장

□ 제 안 이 유

-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기금의 설치·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
- 기금결산보고서가 지방의회의 승인 사항이라는 명백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 승인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”를 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수정함(안 제4조의2)

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
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의2(기금의 결산) ① <u>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4조의2(기금의 결산) ① <u>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(원안과 같음)</p>